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CBCK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차 례】

[자본에 대한 노동의 탁월성(우위성)이 지닌 의미]	5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이 지니는 의미]	17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에 관하여]	27
[노동의 우선성에 대한 성찰]	39
[사람이 자본이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45

위 글들은 교황청 사회과학학술원(Pontifical Academy of Social Sciences)에서 발표된 글들을 번역하였습니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탁월성(우위성) (the primacy of labour over capital)이 지닌 의미

MARGARET S. ARCHER¹⁾

교회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4년에 교황청 사회과학 학술원(the Pontifical Academy of Social Sciences)을 설립했다. 한편으로, 이 말은 학술원이 ‘대화’를 촉진할 때, 교회의 사회 교리(the Church’s Social Teaching)가 가르치는 노동과 고용에 관한 영속적 원리들을, 곧 노동과 고용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하며 권리라는 원리, 노동자들을 상품화할 수 없다는 원리, 공동선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구 차원의 노동 생태를 개발해야 한다는 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노동이 자본을 우선한다는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리들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통찰력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찰력의 이행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문적 견해가 요구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급속한 사회적 변형은 가톨릭 사회 교리의 끊임없는 적응(up-dating)을 요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가톨릭 사회 교리는 최근 사회-경제 차원에서 세계화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과 산업 사회(industrial society)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은 지구 차원의 이 변화들을, 그리고 그 변화들이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필 것이며, 그럼으로써 사회 변화에 기인하는, 사회 교리의 그 빈틈을 찾아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 천년의 마침과 함께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세계 한 지역에서만(남반부에서만) 노동과 고용의 사정이 절박하다고 말하기 힘들게 되었다. 유럽에서(북반부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성취된 균형, 곧 ‘자본의 힘’과 ‘조직 노동자’와 ‘국가 개입’ 사이의 깨지기 쉬운 그 균형은 세계화와 함께 위기에 놓여 있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균형은 이제 다국적 기업들, 직접적인 해외 투

1) 마가렛 스코필드 아처(Margaret Scotford Archer, 1943-) 영국 사회학자. 영국 워위크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 사회학과 교수 역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교황청 사회과학학술원(Pontifical Academy of Social Sciences) 원장 역임.

자, 그리고 국제 금융 시장들의 성장과 함께 세계적인 자본의 패권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다. 남반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반부에서도, 사회는 ‘삶의 기회들’이 연속성을 지닌다는 뜻이 담겨 있는 ‘사회 계층(social stratification, 成層)’이란 개념으로 파악되는 그런 정세로 진입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런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 계층’이란 개념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포용/배제’라는 훨씬 더 불연속적인 현상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선호한다. 발전된 세계의 경우 이는 점점 더 많은 인구가 - 젊고 기술을 갖추지 못한 소수민 가운데 많은 이들이 - 사회에서 주변부로 내몰린다는 신호다. 그렇게 주변화된 이들은, 비고용 때문에, 길거리 삶의 처지로 내몰리기도 하는데 그들에게는 사회 보험도 정치적 목소리도 없다. 그들은 교육의 기회들이나 적합한 건강관리의 기회까지 박탈당하기도 한다. 한편 덜 발전된 세계에서는 주류 경제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렇다고 그 나라들의 농업이 그들에게 가용한 생계 수단이 되지도 못한다. 거주지역은 팽창하지만, 사회적으로 주변화만 날을 뿐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1인당 국민소득(per capita)에 있어 선진 세계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과 고용의 본성에 있어서 일어난 변화들이 어떻게 활동 인구(active population)에 차별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또 누가 가장 불편하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증대하는 비고용(실업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비고용**이 오늘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함)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 가공할 천벌(dreadful scourge)은²⁾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더 강렬해졌으며 또 무직의 점증적 축적보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를 강하게 부정하는 신호들은 없기 때문이다. [변화의] 모습들은 그 자체로 주요 비정부기구들에서 쉽사리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초점을 [변화의] 질적인 추세들에 맞출 것이다.

고용에서 일어난 질적인 변화들, 활동 인구와 자본

노동과 자본 사이의 균형은 깨지기 쉬운데, 그 붕괴는 틀림없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들의 맥락 안에 놓여 있다.

2) 사십주년, 74항.

첫째로, 비록 '노동에의 권리'가 1948년 유엔의 인권선언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거의 없어 노동 정책과 명백하게 연계되거나 혹은 특정 국가에서 실질적 고용 상태에 연계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점에서 법률의 범위들은 현재 정의와 인간 연대가 요구하는 바들을 유인하는 규범들을 상기시키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둘째로, 실재하는 복지국가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지역들에서 세 가지의 위기들이, 곧 1970년대의 석유 위기, 동유럽 공산주의 정부들의 붕괴, 그리고 대부분 발전도상 국가의 경제력 둔화라는 위기들이 비고용을 증대시켰으며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와 공급을 감축하는 추세를 낳았다. 복지국가의 약속은 단순히 '경제적 안전망'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그 약속은 '사회적 시민권 (social citizenship)'에 있어 핵심적 토대였다. 그 약속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경제적 계급 분열을 압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 점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역할의 축소와 함께 비고용 상태 사람들의 경제적 주변화 역시 정치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변하는 일에 있어 그들을 배제 하겠다고 위협한다.

셋째로, 조직 노동의 대표자들로서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선진국들에서 조합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조합들이 자본의 이해관계의 상대역으로서 수행하던 그 전통적 상계 역할을 시종일관하게 상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합들은 집단 교섭의 복잡한 사정에서 전문화된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은] 점점 더 확장되는 지대를, 곧 비조직화된 고용인들, 많은 시간제 고용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점점 많아지는 비-고용인들의 수는 방치된다.

오늘날 노동이 자본에 종속되는 추세에 다음의 여섯 요소가 핵심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일자리의 증가는 주로 제3차 영역의 확장에 의존한다. 따라서 노동의 본성은 점점 서비스 분야 곧 사회·개인적 비즈니스로 이동했다. 비록 선진 세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관광 사업의 성장은 일부 덜 발전된 나라들에서 같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추세가, 지역의 임금 수준들이 생산 비용에 있어 이점을 갖기 때문에, 제2차 영역을 증대시키는 외래의 투자

(external investment)와 이전된 생산(transplanted production)으로 상쇄된다. 이런 영역의 이동은 여전히 ‘산업 사회’ (즉 제2차 영역이 지배적인 사회)의 문제들에 여전히 집중하는 경향을 가진 회칙들의 적응(updating, 갱신)을 요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과 생산의 분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생산에 있어 호조는 빈번하게도 고용에 있어 하락과 동반한다. 이제 현행의 경제 활동에 노동의 기여를 계산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불확정성은 생산성/수익성과 실질적 소득분배 사이의 불확정성도 초래한다. 노동력이 공헌하는 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의 가치들을 결정하는 것은 끔찍하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성 지표들을 그 기술들에 적용할 때 심각한 왜곡까지도 발생한다. 병원들에 적용되고 있는 ‘처리량(throughput) 같은 척도들, 학교들에 적용되고 있는 ‘효율성’ 지표들, 혹은 대학들에 적용되고 있는 연구 ‘실적’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그 척도들과 지표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들을,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 형태의 고용 (교사들, 의사들, 사회복지사들, 경찰들, 판사들 등)에는 그 같은 척도와 지표들이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척도와 지표들은 생산 노동자들의 상품화에는 공헌하겠지만 말이다. ‘효용성 기준 (utility criterion)’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노동’과 ‘고용’에 관한 확장된 개념으로, 곧 동료 인간 존재들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수익성/생산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과업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시민 경제’에 토대를 둔 일부 선구적 과업이 시작되었지만, 그 이행은 부족하긴 하지만 ‘시민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에 좌우될 것 같다.

그러는 동안, 생산성과 수익성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고용과 관련한 위기는 감소하지는 않을 법하다. 경제성장은 점점 정보기술의 공헌에는 점점 더 많이 연결 짓고 있지만, 고용률이나 중요한 노동 투입량은 점점 덜 연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시장의 성장을 완전 고용이나 공평한 수입 분배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낳는다. 이제 생산성은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높아지며, 이는 EU 전체에 대한 새천년기의 전망이다. 차례로 이는 점점 더 많은 잠재적 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약조건의 처지로 내몰 것이다. 고용되지 않은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체 협약의 보호 밖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말이다. 또한 이는 필연적으로 확대된 인구예, 생산 노동보다는 상호 인격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구 (예를 들어, 교육과 건강관리)에 종사하는 인구에 지급해야 할 보수의 자원들을, 공공 재정을 현

저하게 증대시키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득세가 아니라 투기자본의 수익에 과세함으로써 재정을 지원 받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이 조치에만 너무나 큰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첫째로, OECD 국가들에서 이런 방향의 어떤 진화된 현실적인 경제적 맥락 안에서 이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덜 발전된 나라들에 이런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현재의 지구촌 경제 상황에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지구촌 차원에서, 가톨릭과 이슬람국가에서 더 낮은 비율이 여성이, 그리고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여성의 참여는 노동 활동 인구를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도, 이런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볼 징표는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서비스 영역의 확장과 결합하여 여성의 참여는 관측할 수 있는 미래에 확대될 것 같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여성들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가정 내의 가사에 언제나 과다하게 고용되어 있고, 게다가 출산 휴가와 아기 돌봄이라는 영속적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전통적인 형태의 차별에 기인한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불리한 조건들에서도 일한다. 그러나 노동이 각각의 인격의 완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 여성의 자발적인 진입은 기꺼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결국,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의 철수(withdrawal)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 시기에, 즉 반세기도 안 된 시기에, 발전된 사회들 안에서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영역들이 보이는 특성일 뿐이다. 분명히 이는 [여성의 노동현장 진입] 가족이 수행할 책임들을, 특별히 어린이들과 노인들에 대한 책임들을 면제한다는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 문제는 배타적으로 여성의 역할들에 집중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 교회의 사회 교리가 직면한 도전들 가운데 하나는 양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바들을 힘들여 고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고용자들의 주변화를 별충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나 partial working(일부분의 노동)을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은 자녀 양육과 직업

적 지속성을 결합하려는 여성들의 욕구들과 대단히 잘 조화할 수도 있는 ‘사회적 연대’라는 문제에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노동 일수를 줄이려는 추세를 강화하는 것은, 회사가 움직이는 (말하자면 1주 6일 노동제) 시간을 고용인들의 주 노동시간(working week)(말하자면 4일)에서 떼어놓지 않음으로써,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중기(中期)의 비고용을 상당히 완화할 수도 있다. 많은 비즈니스계에서는 그런 제안들이 단위 노동 비용(unit labour costs, 단위 노임)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제안들이 경제성장에 불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정보기술의 증대는 노동자들의 육체적 능력들보다는 지적 능력들의 극대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기술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만일 물려받은 사회적 불평등이 새로운 노동의 세계(정보기술과 서비스 노동)에서 영속되지 않으려면 - 새로운 노동 세계의 성장은 인간의 능력들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계발하는 데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 모든 이에게 가장 높은 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 걸쳐 다음의 두 관계가 철저히 증명되었다. 첫째로, 전체 정규 교육 과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일반적으로는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있으며, 특별하게는 더 나은 직업 및 소득에 있어 더 나은 전망이 생긴다. 둘째로, 이런 교육 및 후속 고용 이점들의 획득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그런 배경을 통해서 문화적 이점들이 가족 안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다. 따라서 교육은 사회적 포용/배제라는 역학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직업적 기회에 수문장으로서 교육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각한 차별을 가한다. 발전된 세계에서, 교육 기회들과 교육적 결과들의 불평등은 인종적 집단들에서, 아시안 계통보다는 아프리카의 인종 집단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젊은 아프리카인들 가운데서 더 높은 비-고용률은, 비-고용 유럽인들보다 훨씬 심하게 겪는 빈곤과 함께, 어려운 정세와 도시 내의 하위계층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 오늘날 인종적 불평등은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들이나 다른 형태들의 차별 철폐의 바람직함에 관해 확신하지는 않는다. 그 같은 프로그램들에 수반된 수준들의 축소는 틀에 박힌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만 이바

지할 수 있는데, 틀에 박힌 부정적 이미지의 강화는 인종적 소수민 가운데 성공한 구성원들을 존중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부색을 전혀 보지 않는’ 정책들은, 단순하게 정규 교육 기회들에만 의지하는데, 교육 및 고용에 있어서 모두 인종적 차이들을 오래 끌 수 있을 뿐이다. 더 나은 실행은 역사적으로 인종 그룹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된 교육-직업적 차이들을 영속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선택적(preferential)’ 활동보다는 ‘발달의(developmental)’ 활동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전문학교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한두 해 학업을 통해 목적을 이룬다는 조건으로 잠정적인 대학 입학 허용하거나, 인종에 기반한 사업들을 위해 단기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조처들은 젊고 덜 숙련된 이들 가운데에서 비-고용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능력이 보편적 기준들에 부응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의 존엄성을 지탱하고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질적으로 볼 때, 노동의 본성은 변형되고 있으며, 변화들에는 빈번하게 다른 고용주들과 다른 노동 장소로의 이동이, 어떤 이들은 ‘가상 일터(virtual workplace)’을 선도하는 것으로 보는 ‘가정 노동’의 증가가, 더 많은 자기-고용과 - 시간제 고용, 제한적 계약고용, 부분적 노동의 축적 고용 등의- 더 많은 임시 고용이 포함된다. 공장들과 광업과 같은 채취 산업들의 폐쇄들에 맞선 저항이 있음에도, 하나의 작업장과 평생의 거주에 적합한 노동은 사라지고 있다. 정보기술의 응용을 동반하는 노동의 파편화가 증대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차례로 연대의 쇠락이라는 문제를, 노동조합원의 감소라는 문제를, 새로운 형태의 불안(자가 고용 사업의 높은 실패율)과 고립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동료 노동자들과 사회적 연대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가며 살아야 할 인류의 단일성에 내재하는 것이지만, 그 연대의 양태들은 변하고 있으며, 옛 형태의 노조 조직화, 옛 형태의 조합 운동, 그리고 직업적 연합들조차도 어느 곳이나 약해지고 있다. 문제는 실행 가능한 새로운 형태들의 사회 연대를 특정 하는 것인데, 그 형태들은 노동의 우선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자주 탈규제의 ‘미국식 모델’이 쫓아야 할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는데, 이 모델에서는 고용 조건들과 임금에 있어 더 큰 유연성이 사실상 비-고용을, 심지어 비숙련자들 가운데서도 비-고용을 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모델

은 재직기간(job-tenure)의 불안전성과 함께 임금 격차의 확대를 동반한다. 임금 격차의 확대는 이 모델이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이들이 대규모 하위계층으로부터 점점 격리되는 사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분열을 강화하는 뿌리 깊은 경향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런 사회는 인종적 집단들과 이민을 적절하게 대변하지 않는다.

저임금에서의 탈규제는, 그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에 결부시킬 때, ‘빈곤의 정식(a formula for poverty)’이 된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밝은 (재)고용의 전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정식’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대폭 축소된 보험급여에다가 장기간의 비-고용은 지금의 인구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열악한 영양 상태, 형편 없는 교육, 빈약한 삶의 기회로 세대를 잇는 파멸(intergenerational entrapment)을 수반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는 비-고용을 다음 세대에 안기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가 1996년 담화에서 강조한 것처럼,³⁾ 변영과 경제적 성장은 사람들과 인민 희생으로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liberalism)는, 다른 경제 체계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 그저 생산의 도구들로 만들어가면서 자본을 보유한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심각한 불의를 자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1997년에⁴⁾ 교황은 시장의 자유는 ‘le droit primordial de tout homme a avoir un travail’(모든 인간의 원초적 권리는 노동의 권리라는 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5. 수익성을 낳는 자원들을 노동의 세계에서 점진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촌 차원에서 더 공평한 부의 분배를 위해서는 그 분리가 함의하는 바들에 주목해야 한다. 거래이익(trading profits)은 대부분 실재 경제 과정들과 분리되는데, 이 거래이익 증가의 윤리적 현안은 그 같은 자본 소득에 합당한 재정 조치의 관점에서, 그리고, 특히 제3세계에 있는, 규모가 더 작고 더 노동 집약적인 생산의 (기업가 정신과 협동심)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다국적 대기업들이 금융자본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특히 시급하다. 세계 자본 시장에 대한 그들의 더 큰 시설은 더 많은 자본 집약적인 생산과 이에 상응하는 노동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 결과로 빈번하게도, 고용의 감소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발견

3) L'Osservatore Romano, 22 March 1996 참조.

4) L'Osservatore Romano, 25 April 1997 참조.

할 뿐 아니라, 적량생산(lean-production), 다운사이징(down-sizing, 축소) 및 철새 자본(migratory capital)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차원의 경쟁력이 된 전략적인 노동의 조작도 발견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 노동 생산성이 다른 지역의 고용을 자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분의 사람들의 재-고용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몇 가지 증거는 그 주요 영향이 저임금 서비스 노동의 성장에 편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로 노동 이익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국제 시스템이 남용들을 피할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 남용들 가운데 일부는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저개발국의 국가 채무에 미치는 악영향, 자본의 자유로운 순환이 - 그것으로 추정된 부양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 제3세계와 불평등한 [자본의] 교환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이 그 예들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바는, 유익한 경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 남용들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고용, 임금 수준 및 국제적 불평등에 되돌아가는 그 남용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듯이 투자 금융과 투기 자본 이득을 구별하는 데에 달려 있는데, 그 구별은 선물 금융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거래와 같은 다양한 발전으로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 외환 거래처럼, 국제 금융시장의 특정 운영은 명백하게 투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외환 거래에 대한 과세는 더 고가라는 관점에서 고객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금융시장은 정부의 내부 주도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바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형태상으로도 포괄하는 상위 기구(a superstructural and overarching agency)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외 거래의 탈출구가 그 거래 당사자들에 의해 폐쇄될 수는 없으므로, 현존하는 당국 간의 협정 그 이상에서 구축된 자율규제에는 큰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국제적인 금지법률 제정은 필요하다. 그러한 국제기구(빈곤과 기아로부터 보호할 세계적인 사회 관계망 창출을 위해서 투기자본의 국제 흐름에 대한 과세를 제시하는 토빈세(Tobin tax)와 UNO 보고서와⁵⁾ 같은 제안들이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바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규제되지 않는 세계적인 투기의 출현에 필적하고, 개발된 세계와 개발 중인 세계 사이의 증가하는 자본 분리를 상쇄시키는 직분을 다하는 그런 공평한 재분배 작용기관으로 일하는 세계 수준의 규제 기관을 고려해야 한다.

5) UNO (1992), World Report of Human Development.

6. 1994년 세계 사유재산의 3분의 1을 통제할 것으로 추정되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본 집중은 선진국들의 신규 고용의 대다수가 현재 그들에 의해 창출되었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대한 전례가 없는 헤게모니를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유동 자본은 노동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노동자의 조직화와 취득한 법적 권리가 가장 낮은 그런 지역들로 이동한다. 저개발국에 미치는 영향은 따라서 자본의 투자 '대신'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노동 조직화를 동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상호적 과정에는 지속적 투자에 관한 그 어떤 약속조차 없다.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투자패턴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노동 비용을 쫓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구 차원의 안녕(well-being)은 철저하게 유연한 세계 노동 시장에 의해서 가장 잘 촉진된다는 통념은 자유로운 노동 시장과 동의어가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남반부에서 북반부로 이동하고 있지만, 남반부의 이주자들은 극단의 빈곤층에 있는 이들이 아니며 이는 남반부 내부의 두뇌 유출을 초래한다. 게다가, 북반부의 제한 고용 정책들은 (자본과 기술을 요구함으로써) 남반부 내부의 두뇌 유출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에 있었을 때보다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빈번하게 손님 노동자들(guestworkers)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난민)은 이주한 나라들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결과들은 국가 정책 수준에서 취해진 발의 중 일부가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인데, 그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은 소규모 유럽 국가들 및 제3세계의 많은 국가의 국가 예산을 초과한다. 게다가 투자패턴들과 이윤의 수출은 역사적 발전의 우연적 사건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신-식민주의의 효과를 연장하기 때문에, 지구 차원의 결과는 남반부와 북반부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넓히는 것이며, 이는 빈곤국 정부의 정치적 행동에 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중한 낙관주의의 대의는 이미 국경을 초월한 법적 제도들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발전들을 조사해보면, 유럽 연합이나 국제 인권법원은 아직도 다국적 위법행위를 성문화하는 일을 진지하게 시작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제시는 '민주적 세계 공동체 질서'(요한 바오로 2세, April 26,

1997)를 주창함으로써, 국제 통화 기금(IMF)과 같은, 현재의 국제기구의 경제적 제한들을 넘어서 [그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질서가 수반하는 제도들은 대의(representation)와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적 이익에 병행하여] 사회적 이익의 진보에 전념할 것인데, 그런 대의와 입법이 없는 제도들은 세계 경제 운영의 효과와 현란한 비-상보성의 상태에 머물고 말 것이다.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58항)에서 강조하였듯이, ‘전체 인류 가족의 이익은 공평하게 대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장하려는 세계 수준의 상쇄 제도들(countervailing institutions)이 요구된다. 우리 학술원의 일반적 과제가 교회의 사회 교리와 대화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그런 중요한 지점들(앞의 6개의 요소)을 강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토의들은 사회 교리의 확립된 체계와 직접 일치한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이 지니는 의미

EDMOND MALINVAUD¹⁾

1. 본문에 앞서

“학술원은 적합한 대화를 통해 ... 교회가 그 사회 교리의 발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교회에 제공한다.”(학술원 정관 1조)

대화에는 직접이든 더 직접적이든 덜 직접적이든 많은 형식이 있을 수 있다. 학술원은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특별히 포럼은 직접 대화의 상호교환을 허용할 수 있어 더 나은 상호 이해와 앞으로 학술원이 나아갈 더 나은 방향을 위해 결실을 낼 수도 있는 모든 이점을 갖는다.

이 글은 확고한 결론들을 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학자들이 보는 현안들의 상태를 설명할 것이다.

이 글은 영속적인 원리(여기서는 노동의 우선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현재 받아들여지고 해석될 그 맥락(context)에 관한 새로워진 지식(updating knowledge)으로 권위자들을 안내하는 데 특별히 주목할 것이다.

노동 우선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 제3장의 11항은 “우리는 이런 현안들이 놓인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에 관한 현안들이 놓인] 맥락을 놓아두고 인간 노동이라는 근본적인 현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끝맺는다. 바로 다음 12항의 첫 단락은 “이 원리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은] 생산 과정에 직접 관계된다.” 이글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있다.

2. 생산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

“생산 과정에서 노동은 언제나 주요 동인(efficient cause)이 되지만, 생산 수단의 전 체 직접인 자본은 단지 하나의 도구인(instrumental cause)이 될 뿐

1) 에드몽 말랭보(1923-2015) 프랑스 경제학자, 교황청 사회과학아카데미 초대학장 역임

이다.”(LE, 12항)

이와 관련하여 학술원은 그 연구에서 두 중요한 추세를, 곧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점증한다는 추세와 무형의 자본(intangible capital)의 중요성이 점증한다는 추세를 강조하였다. 최근의 사회 교리 저술들은 첫 번째 추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였지만, 두 번째 추세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무형의 자본이 지닌 몇 가지 문제는 그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유형의 자본(physical capital)에 대한 평가에 비해 쉽지 않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그것은 근대의 큰 규모의 법인에서는 회사의 구조 안에서 기업 활동 관리뿐 아니라 노동자 대표들의 정보 관리와 자본 보유자들의 정보 관리를 어렵게 한다. 무형 자본의 주요 세 가지 형태는 각각 다른 평가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 형태들은 결합이 되어 운영 중인 한 회사의 생산 과정에 있어 한 요소로서의 자본의 가치와 - 이 자본의 소유자들은 재산을 팔고 싶어 할 수 있는데 - 이 자본에 대한 재산권들의 가치 사이의 상등 관계를 희미하게 하는 데 공헌한다.

어떤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와 개발은 그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그 프로젝트의 가치 가운데 많은 것을 손해 본다. 자본 구조 조정, 소비자 연결망 구축에 있어 광고와 다른 투자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시장 연구에 이 부분도 표기되어야 한다. 이제 문제는 모든 활동 수준에서 ‘새로운 경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정보 처리 기술들의 확립을 따라야 하는 조직적 투자로 확대된다. 이러한 무형의 투자는 이제 회사들이 생산의 한 요소로서의 자본 증가에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회칙 「노동하는 인간」 12항의 넷째 단락에서는 “자본이 되는, 이 모든 생산 수단은 인간의 노동이 이룬 역사적 유산의 결과다.”라는 점을 밝힌다. 시간은 차원(dimension)으로 인식되는데, 시간 차원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구축된 자본 이론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이론에서 시간 차원은 불확실성의 차원과 점점 더 자주 관련된다. 다소 멀고 다소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주장들이 교환되고 있는 금융시장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분명히, 현대적인 생산 과정의 수행에서 이러한 재정 운영(financial operations)의 역할을 시작으로 해서, 재정 운영에 관한 교회의 사회 교리를 육성하고 단호하게 주장해야 한다. 학술원은 교리의 그런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주(인)

회칙 「노동하는 인간」 11항의 셋째 단락에서는 “노동 현안은 ... 소수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기업주들이나, 생산 수단의 보유자들이나 소유자들의 집단과,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그리고 단지 노동으로만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대다수 사람 사이의 ... 커다란 투쟁의 바탕으로 제기되었다.”라고 밝힌다. 다음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 holders), 노동자들, 경영자들, 그리고 자본 소유자들(capital owners)의 각 가중치를 재검토하는 현재 시점에서, 많은 경우에 일치하지만 그래도, ‘기업주들’과 ‘자본의 소유자들’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시도하려는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업주들에 관하여, 최근 회칙들, 특히 「백주년」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기업주 자신이 노동자이기도 하다. 둘째, 이 노동은 결정적이며 긍정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보자. “이러한 생산적 노력을 조직하고, 그 기간을 계획하고, 그 생산적 노력이 만족시켜야 할 그 수요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산적 노력이 부응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 모두가 오늘날 사회 안에서 부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규율되고 창의적인 인간 노동의 역할, 그리고 그 노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주도적이며 기업가적인 능력의 역할은 점점 자명하고 결정적인 것이 된다.”(「백주년」, 32항)

문헌에서는 혁신(innovation)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혁신은 새로운 유용한 기술적 가능성의 발견으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맥락의 변화들, 특히 상대적인 가격과 비용 구조(the structure of relative prices and costs)의 변화들에 대한 영리한 적응으로도 비롯되는데, 그 구조는 매우 빈번하게 상대적 희소성(relative scarcities)의 변화를 반영한다. 장기 추세에 따라 노동 생산성은 대단히 증가 되었는데, 그 추세는 자본 비용(the cost of capital)에 비례하는 노동 비용(the cost of labour)에 그리고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적응하면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수익 과정(beneficial process)은 고용인들, 자본의 소유자들과 기업주들 사이의 수익 분배(the distribution of benefits)에 있어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아래 6번에서 그 문제들을 다룰 것이며 그 문제들이 바로 더 상세한 교리의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들의 경영은 현재의 ‘기업윤리(a business ethics)’ 개발

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교리의 설명을 마찬가지로 환영할 것이다. 학술원과 의견 제시자들은 종종 이 기업윤리 개발을 의심하는데, 냉소적인 동기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기업주들이 모두 냉소적이지는 않다. 교회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시도하는 그 기업주들이 따라야 할 윤리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보다 명료하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회칙 「백주년」은 “이윤이 기업 생활의 한 가지 조절의 역할을 하지만, 유일한 것이 아니며,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생활을 위하여 적어도 같은 정도로 중요한, 다른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35항) 라고 밝히고 있다. 더 명백한 것은 기업가의 일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성이다. “노동 공동체들을 창조에 있어서 근면, 열의,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험에 있어서의 조심성,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권위와 충실, 기업의 공동 노동을 위하여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운명의 타격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필요한 결정들을 수행하는 용기 같은 중요한 덕들이 포함된다.”(32항)

4. 자본의 소유자들, 노동자들과 경영자들

사회 교리는 자본의 사적 소유에 집중하고 집단주의의 프로그램을 거부한다. 그러나 사회 교리는 자본의 공공 또는 집단 소유권을 인정한다. 실제로 회칙 「노동하는 인간」(14항)에는 다음과 같이 자본 소유에 대한 결정적 진술이 있다. “... 생산 수단은 노동을 거슬러 소유될 수 없고 한갓 소유를 위한 소유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소유 - 그것이 개인 소유이든, 공공 소유이든 아니면 집단 소유이든 간에 -에 대한 정당한 명분은 오로지 노동에 기여해야 하고, 노동에 기여함으로써 재화의 보편적인 목적과 재화의 공동 사용권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과 노동자의 정당한 위치에 대한 인식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의 권리에 있어서 다양한 적응을 요청한다.”(14항) 회칙 「백주년」은 제4장을 마치면서, 기업의 생활에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참여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기업체를 ‘자본의 사회’처럼만 생각하면 안 되며, 기업체는 동시에 기업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고유한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이론과 동시에 노동을 통하여 협조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인간 사회’이기도 하다.”(43항)

학술원은 기업(체)의 이러한 개념에서 비롯된 다양한 현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여러 번 다루었다. 여기에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주식 보유자가 소유한 기업의 경영에 대해 새롭게 인식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문제는 경영자들에 대한 주주들의 지배력 강화, 주식 시장에 자산 일부를 투자하는 대규모 집단 기금의 개발, 자본 소유의 높은 국제 이동성으로 이어지는 금융 시장의 세계화 등 세 가지 추세에 의해 과거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이 세 추세는 기업의 생활이 멀리서 내려진 결정에, 곧 멀리 있는 주식의 구매자들에 의해 내려진 결정뿐 아니라 멀리 있는 주주의 대리인을 변경시킴으로써 내려진 결정에 점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경영자들의 자유가 강력하게 제한될 것이다. 그들은 외부 자금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필요와 요구보다 기업 주식의 가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식 가격은 기대 이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극대화는 부과된 전략이 될 것이다.

방금 기술된 문제의 중요성은 학술원에 의해서도,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사회과학에 의해서도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 진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려 있다. 대기업의 기업가가 널리 분산된 주주가 제공한 자본금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하는가? 주식 가격은 무엇을 반영할까? 향후 3년 동안 얻게 될 수익을 반영할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엇일까?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 앞 절의 마지막 단락에서 소개한 회칙 「백주년」 35항에서 인용한 글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하다.

5. 제도적 구조: ‘노동 서비스 시장’

회칙 「백주년」 34항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자유시장은 자원을 활용하고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의 공정한 교환의 논리와 그에 부합하는 정의의 형식에 앞서, 그 존엄성을 근거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귀속하는 어떤 것들이, 즉 충분한 임금, 사회 보험, 고용 조건을 위한 적절한 보호가 있다.” 이 두 문장의 중대성을 검토할 때 특히 노동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안들의 상태를 조사하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학술원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된다. 그런 다음 토론의 기본사항들을, 즉 노동 서비스 시장을 지배하는 기관들의 선택에 관한 토론의 기본사항들을, 기본 개념들의 의미에 관한 수사적 논쟁 이상의 것이 아닌 것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진지한 사회과학자는 노동 시장이 자본 시장이나 사과 시장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단지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하나는, 모든 시장이 서로 계약할 때 새 계약의 두 당사자는 자유롭게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 계약의 조건들이, 다소 엄격한 규범 내에서, 시장의 부족한 면에 유리하게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요-공급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요가 과도하게 많으면 공급하는 쪽을 선호한다. 대다수 사회과학자는 노동법들과 규제들의 존재가 이전 시대와 관련하여 비가역적 과정이었다고 동의한다. 대다수 사회과학자는 “인간 노동의 자유롭고 인격적인 본성과는 달리, 자본의 절대 우세, 생산 수단과 토지 소유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이해되는 경제 체제”(「백주년」 35항)를 분명히 반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30년 동안, 많은 전문가는 특히 서유럽에서 발전했던 기존의 노동 규정들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때 주장은 변치 않는 그 규정들이 노동 시장 안의 과도한 경직성을 가져온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경직성이 새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에게 손해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비-고용과 더 낮은 생산성 비용을 불러오므로써, 결국 [규정들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 곧 ‘내부자들’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탈규제’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프로그램을 지지했다. 노동 운동 내부에서 그리고 사회과학자들 내부에서 많은 이들은 이 프로그램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대규모로 해체하게 될 것이라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은 ‘평평한 운동장’ 설립 추진의 이미지로 강화되었다. 어떤 탈규제가 발생했든, 그리고 나라마다 탈규제가 다양한데, 탈규제가 극단적 시나리오를 확인시켜 주지는 않았다. 오늘날 진정한 문제는 개혁의 문제로서, 인간 존엄성에 중요한, 대안적 법과 규제 체계들의 선택을 재검토하는 문제로써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학술원이 교회에 줄 수 있는 중요한 공헌은 이 선택의 조건들에 대해, 즉 법체계와 규제 체계에서 기대되는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려진 것을 제시하는 일이어야 한다.

학술원은 아직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않았다. 그러나 학술원은 그 의제에서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다. 그 과업의 어려움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 시장 기관들은 복잡하다. 대안적인 법체계와 규제 체계가 가져올 장기적 결과를 알고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경제 및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이 복잡성을 다루는 데 있어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며 일부 과학자는 그 일을 하고 있다.

6.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

교회의 가르침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실제로 회칙 「노동하는 인간」 제3장의 제목은 ‘역사의 현 단계에서 본 노동과 자본의 투쟁’이다. 그러나 회칙 「새로운 사태」(15항) 안에 있는 “자본은 노동 없이, 노동은 자본 없이 할 수 없다.”라는 문장 역시 여러 차례 반복된다. 「노동하는 인간」 11항은 노동자들이 “수익 극대화의 원리를 따르는” 기업주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는 그 기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언급할 때,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실제 투쟁이, 회칙이 비난하는 체계적인 계급투쟁으로 변형되었을 때” 그 문장과 관련한 설명을 제시한다. 착취는 두 형태를 보였다. 하나는 노동자의 권리들에 가한 불의의 형태로서, 이는 section 5에서 다룰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 주목해야 할 너무나 낮은 임금 형태다.

회칙 「사십주년」(71-74항)으로 시작하는 가르침은 정당한 임금(just wages)을 다음의 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1)노동자와 그 가족 부양에 충분한 임금,

(2)고용한 사업의 생존 역량을 고려한 임금, (3)특히 만족스러운 고용 수준을 위해서 전체 경제에서 요구되는 바들과 양립할 수 있는 임금. 아마도 소득분배에 대한 갈등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여겨질 때는 [임금과 관련해] 더 많이 언급될 것이다. 그 문제는 노동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저축(이익)과 위험(기업 소유주에게 발생하는 순이익이나 손실의 가장 큰 부분)에 대한 보상에도 관계된다. 가르침은 동전의 반대 면에 관해 침묵해야 하는가? 갈등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 (세금 및 공공 이전 시스템, 파산법 등)에도 관계된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무엇이 정의여야 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이는 학술원이 마련할 수도 있는 미래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배 갈등에 있어 금융 시장들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주제에 포함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자본과 노동의 갈등에서 노동을 대변하고 강화하기 위해 발전했다. 지난 20년 동안 산업국들에서 힘의 균형은 손해를 입히며 이동했다. 그러나 가르침은 노동조합들이 “사회생활의 핵심 요소들”이라는 것을, “비록 논쟁적 물

음에서 투쟁이 상호 대립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정의”(『노동하는 인간』, 20항)를 위해서라는 것을 단언한다. 이제 노동조합들은 직업과 직무의 본성에 있어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정세의 점증하는 복잡성에도 직면했다. 노동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흥미로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일자리 손실의 경우들은 그 수에 있어 늘어나고 있다. 노동조합에 지능적인 전략들이 요구된다. 학술원은 그 점에서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주목했다. (1) 가능한 많은 노동력이 창의적이며 보람 있는 직업의 기회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 인간적인 참여와 성취를 극대화하는 방법들로 새로운 가능성이 이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의 사용이 있어 점증하는 유연성은 개별 노동자들을 과도한 수준의 불안정성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언제나 너무 적은 ‘좋은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학술원은 그러한 전략에 관한 현안들을 더 조사할 수 있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에 관하여

H.E. CARDINAL KARL LEHMANN¹⁾

I

위 제목은 교회의 사회 교리의 중심 메시지로서, 이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1981년 9월 14일 인간 노동에 관한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간결하게 그리고 의심 없이 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 원리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산업 시대의 경제 질서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절대로 서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원리는 생산 과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은 언제나 주요 동인이 되지만, 생산 수단의 집적인 자본은 다만 하나의 도구 또는 도구인이 될 뿐이다.”(12항, 1) 따라서 “자본의 개념은 인간이 자의대로 쓸 수 있는 자연 자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변형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을 인간화시키는) 수단의 총체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12항, 4) 이 개념은 아주 간단한 인간적 도구들의 발명만이 아니라, 실험실의 기계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이고 복잡한 기술들의 발명에까지 이어진다. 교황은 매우 엄격하게 이 발명과 노동을 연결한다. “따라서 노동에 이바지하는 것, 즉 현 기술 수준에서 최고도로 완벽한 ‘도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노동의 결과다.”(12항, 4)

아무리 완전하다 하더라도 도구들은 단지 인간의 노동에 종속되므로, 모든 것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진정하고도 유효한 주체는 인간이라는 그 사실에 달려 있다.(12항, 5) 교황은 강화된 인간학적 관점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가 강조하고 역설해야 할 점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우위, 즉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위성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모든

1) 레만 추기경(Karl Lehmann, 1936-2018) 1983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마인츠 교구 교구장 역임. 1987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주교회의 의장 역임. 독일 마인츠 대학교(University of Mainz)와 프라이부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Freiburg)에서 신학 교수로도 활동.

것은 다만 사물의 집적일 뿐이다. 인간은 노동의 주체로서 그가 하는 노동에서 독립한 존재이며, 인간만이 인격체이다.”(12항, 6)

마지막으로, 교황은 자본과 노동은 근본적으로 서로 대립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경제학적’ 전망 안에 나란히 놓인 두 가지 비인격적인 힘, 두 가지 생산 요소인 것처럼 인상을 주는 그런 일을 피할 필요까지 있다”(13항, 3)라고 주장한다. 인간 노동은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서만 독점적으로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물질의 우위성을 의미하고 따라서 용납할 수 없는 형태의 경제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3항, 3 참조) 노동 체계가 “위에 개진된 원리에 상응하려는 노력을 통해 근본적으로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립을 극복할 때” 비로소 실제로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 “이때의 원리는 노동의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우위성, 인간 노동의 주체성, 노동자에 의해 제공된 용역들의 본성과 관계없이 전 생산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참여의 원리이다.”(13항 1)

II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이, 한편으로는, 18세기의 철학과 경제 이론들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출현과 급속한 발전 시기의 경제 사회적 환경과 실행으로 점점 더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의 결과로, 자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인간 노동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인간을 노동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 분리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근거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 요소들에 대한 관점에서, 더 좁은 의미의 세 개의 생산 요소들, 즉 노동과 자본과 토지라는 고전적 이론이 있다. 그러한 이론은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 이 요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구체적 경우에 자본과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합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 되는 노동의 단일 생산 요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상품이 노동자들에게 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한다. 은행가인 D. 리카르도는 A. 스미스와 함께 가치 노동 이론의 토대를 놓았는데, 그 이론은 마르크스도 채택하였다. 리카르도는 자본이 핵심적 생산 요소여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는 부동산(real property)을 전혀 독립된 요소로 보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노동은 자본에 부가된 것쯤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리카르도는 높은 자본 수익률, 저임금 및 기초 연금의 폐지를 옹호했다. 반대로, 마르크스는 자본은 대체로 노동에 부가된 것이라 천명했다. 사실 그는 자본 그 자체를 ‘집적된’ 혹은 ‘구체화 된’ 노동으로 여겼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가는 고용주나 자본 소유자인데, 그 자본가는 이 노동을 (실제로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런 맥락에서 착취 이론, 빈곤 이론, 그리고 이윤율의 하락과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붕괴에 관한 학설이 개발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노동 및 그 대가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를 맡아야 했다.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교황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원리가 “인간의 역사적 경험의 총체에서 떠오르고,”(12항, 1) 모든 역사적 시대와 인간 정세에 적용되며, 결정적으로는 노동 체계의 형태와 전체 사회-생태 체계를 함께 결정한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원리를 “확고한 신념”(13항, 5)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교회가 언제나 이 원리를 가르쳤다는 것(12항, 1)과 그 원리가 교회 가르침의 영속적 유산의 한 부분이며 중요하고 결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확신한다.(12항, 6)

III

이러한 이유로 이 원리가 교회의 사회 교리의 나머지 영역에서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적어도 간단하게라도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내용과 언어에 있어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교황의 선언들은, 그 내적인 지적에 있어, 한편으로는 종속적인 임금노동자들을 만난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철학적, 신학적 인간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교회의 사회 교리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당연히 회칙 「노동하는 인간」의 진술과 비교하면, 이러한 참조들은 아직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초기의 사고들로 간주 될 수밖에 없더라도, 그 사고들은 이미 기초적 방향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교황 레오 13세가 그의 1891년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채택한 다음의 정식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각 계급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노동 없이는 자본이 할 수 없고, 자본 없이는 노동도 할 수 없다.”(19항) 이 정식은 다음의 설명과 함께 1931년 회칙 「사십주년」에서 반복된다. “그러므로 자본과 노동의 협력으로 얻어진 것을 어느 한편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며, 또한 어느 한편이 다른 편의 노력을 무시하고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는 것은 정의에 크게 어긋난다.”(53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차별화된 인식이 궁극적으로 진화되어, 양 생산 요소가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황 요한 23세는 1961년 「어머니요 스승」에서 노동의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다. “노동이란 바로 인격의 직접적인 표출이므로 그 본성상 도구적인 것에 불과한 외적 재화 소유보다 언제나 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노동에 관한 이런 시각은 확실히 우리 문명에 있어 진보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다.”(107항) 불과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은 이런 초기의 사고들에 영감을 받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재화를 생산하고 교환하고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노동은 경제 생활의 다른 요소들보다 우월하다. 다른 요소들은 오로지 도구라는 본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 노동은 자가 노동이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노동이든 직접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치 자기 도장을 찍듯이 자연의 사물에 자기 모습을 새기며, 자기 의지로 사물을 다스린다.”(67항) 매우 근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사회 질서와 그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여야 한다. 사물의 안배는 인간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26항)

이런 진술들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노동하는 인간」에서 인간(인간의 인격)이 어떤 생산 수단보다도 우위를 누린다고 밝힐 때 그가 그의 전임 교황들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개념에서 교황은 자기 노동을 통해 결합된 인간 존재들을 보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가 주목한 주장으로 전체 개념을 상당히 명확히 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황은 무엇보다도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월성에 대한 추론을 정교하게 하고 심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교황은 특히 강화된 철학적-신학적 인격주의와 부분적으로는 현상학적 분석으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했는데, 이 둘은 동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떤 종류의 일반적 사회주의에서 이 원리의 뿌리를 찾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 자체로 ‘자본과 노동’이라는 일반적인 표어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 원리를 신중하게 구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하는 인간」에서 노동주의(labourism)의 강력한 영향력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먼저 이 용어 자체

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용어는 적어도 근대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 즉 자본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을 그 근본적인 기원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W. 베버는 노동의 이 우선성을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 우선성은 사실상 논쟁의 여지가 없고, 근대의 시작부터 수많은 학자와 학파의 공동 재산이다. 그것은 성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1517)에서,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1632-1704)의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그것은 정치경제학의 중농주의 학파(18세기)와 정치경제학의 주창자 D. 리카르도(1772-1823)의 작품에서도 발견되는데, 리카르도의 사상을 바탕으로 K. 마르크스는 그의 ‘노동 가치론’과 ‘착취론’을 구축했다. 이 우선성은 프랑스 유명한 사회 이론가 Claude Henri de St. Simon(1760-1825)과 다른 이들의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이 자리에서 1891년 최초의 사회 회칙 「새로운 사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 회칙은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은 진실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서만 이라는 사실은 아주 확실하다.”(25항) 분명히 이는 늦어도 르네상스 시대 이후 근대인의 자기 이해를 광범위하게 나타낸다.

IV

이런 맥락에서, ‘자본에 대한(over) 노동의 우선성’ 원리를 좀 더 자세히, 곧 이 원리를 매우 일반적인 용어인 ‘자본과(and) 노동’의 도식적인 구분과 대조함으로써, 좀 더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분법의 역사적 기원은 이미 위에서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물론 현재 관계적 구조 내의 이 문구(자본과 노동)는 모호하고 여러 다른 해석들에 개방적이며, 따라서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적어도 그 같은 분명히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구별화 자체가 종종 불신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1982년에 Wilhelm Weber는 이미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고전적인 경제적 이원론이라는 상당히 소중히 여겨졌지만, 그 사이 구식이 되어버린 장난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구식의 이원론은 인간과 노동 사이의 인간학적 이중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안에서 인간의 우선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구별화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Niklas Luhmann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 구별화는 기본적으로 암시적인 구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는 적절할 수 있지만,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 구별이 경제 체계들

을 기술하는 데 이제 적합하지 않은 개념을 갖고서 점점 대립하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 ‘전투적 의미론’으로 진행된 구별은 그동안 실재들에 관한 모든 뜻을 상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세부 사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모순들이 증가한다. 거의 만날 수 없다. 이런 구별로 평가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차이 내에서 무게 중심을 옮기거나 중립화를 피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제들은 거의 없다. 이 전면의 투쟁은 어디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한 비판적 성찰과 다른 내용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노동하는 인간」, 12항 1)이라는 어구의 고유한 의미를 명심하여야 한다. 게다가 이는 “자본의 도구에 대한 인간의 우위성”(「노동하는 인간」, 13항 4)라는 어구, 혹은 “사물에 대한 인격의 우위성, 그리고 생산 수단의 전체 집합으로서의 자본에 대한 인간 노동의 우위성”(「노동하는 인간」, 13항 5)이라는 확장된 공식화에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처음부터 교항은 개념적 쌍(노동과 자본)이 서로 부적절하게 대립하는 것을 피하려 노력했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이 원리 내에서 도구로서의 자본에 대한 노동하는 인간의 우선성을, 어떤 경우에도 생성되는 영속적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가치를(자본 위의 노동, labour over capital) 구성하는 이 원리의 침해를 가리키고, 추구하는 가치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구조적 과제들을 공식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의미 내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세와 관련해서 그리고 세계화가 된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원리는 즉 우선적 기준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그 원리로, 적어도 정당한 경제 체계는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에 관해 기존의 체계들은 평가할 수 있다. 비록 그 원리가 사회-윤리적인 측면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더라도 - 그리고 이것이 경계선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V

특히, 일반적 특징 그 이상으로 교항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첫눈에 그것은 매우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측면은 그 순진함을 놓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위에서 말한 이 진리에 비추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본이 노동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된다. 절대로 노동이 자본에 대립되거나

자본이 노동에 대립되는 것일 수 없으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더구나 이러한 개념의 이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될 수는 없다.”(「노동하는 인간」, 13항 1) 이는 상당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교황은 노동하는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노동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노동하는 인간」, 15항, 2) 방식으로 생산 과정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지나친 관료적 중앙 집권 체제 안에서 개별 노동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지닌 노동의 참된 주체라기보다는 하나의 단순한 생산 수단”(15항, 2)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 기반하여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노동하는 커다란 일터에서 자신도 하나의 소유자라고 온전히 생각할”(14항, 7) 수 있어야 한다. 기업 내 사람들의 통합은 언제나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그에 따라서 교회의 사회 교리는 이 기업은 그 안에서 노동하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인간-지향 구조 또한 이 개념 내부에서 참여와 파트너십의 순위 매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과 자본 소유를 최대한 결합하고 자본의 익명성을 줄이려 할 때,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을 어떻게든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데에는 두 가지 행동 경로가 있을 것이다.

첫째, 중요한 것은 조합과 경영 사이의 진정한 협력이다. 그들의 의무는 그 구성원들의 복리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타인에 대한’ 투쟁이나 ‘집단 혹은 계급적 이기주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동 시장 당사자들 사이의 투쟁은 “사회정의의 선을 지향하려는 것이지, 반대자를 제거하려는 ‘투쟁’이어서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20항, 3) 공동-결정, 이익-공유 그리고 참여의 다른 방법들이 반드시 이 결합(협력)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것들을 자세히 다룰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사십주년」, 65항; 「어머니요 스승」, 91-92항, 「사목현장」, 68항, 「노동하는 인간」, 13-15항 참조)

따라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둘째 행동 경로는 밝혀졌는데, 다시 말해 국가 경제적 자본 형성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그것인데, 이는 19세기 이후 계속해서 가톨릭교회의 사회 교리가 기울인 오래된 관심이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그 관심은 인간 노동의 주체적 성격을 회복하거나 보호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노동하는 인간」, 18항 4참조)

VI

이는 적어도 적지 않은 차원에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원리를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까지 개괄된 개념 내에서 이 원리가 지닌 한계들을 지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면 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원리 자체를 확장할 수 있기 위해서다. 그 측면들은 다음과 같다.

회칙 「노동하는 인간」의 이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특정 형태의 노동이 지닌 주된 역할에 집중했다. 그것은 의존적인 노동(고용된 노동, dependent work), 고용 임금 노동(dependent wage labour)으로서 그것은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다. 물론 이 영역에도 독립적 자기-고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황 역시 이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사고와 정신은 고용 임금 노동과 결합하고 있으며, 그가 매우 특별하게 자본에 대한 우위성을 단언하는 것은 그 고용 임금 노동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 노동은 예를 들어 더 많이 지식과 자본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지적 노동은 그 고유의 전망을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노동 우위성’의 원리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노동을 좁은 개념의 덮에 걸리게 하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회의에서 회칙 「노동하는 인간」 자체는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1부, 2부와 5부에서 노동의 개념과 3부와 4부에서 노동의 개념을 참조하라)

이제 노동과 자본 사이의 이원론적 특성화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불가피하게 대립하는 두 요소의 이해관계를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의 이 두 요소가 구성적이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은 충돌하는 이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 양측에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이루는 데 달려 있다. 기업이 지닌 이 이분법적 개념은, 그 형태를 달리하지만,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마르크스 진영에서도 모두 발견된다. 기업가 정신이 마르크스주의에서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반복 언급되었다. 최소한 그런 지향의 몇몇 경향들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실제로 실질적인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구별해야겠지만, 나는 경영의 기능에 있어 이 기업가 정신의 수행이 충분하게 강조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도식적으로, 자본은 언제나 ‘게으르고’ 혹은 ‘무익한’ 자본으로 묘사된다. 자본과 노동은 불가결하게 서로 의존적이지만, 이 두 기본적 혹은 구체적 요소들은 서로를 향한 길을, 그리고 그것들이 함께 수행할 무엇인가를 향한 길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 그것들을 함께 모을 누군가가 필요하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그 두 구체적 요소들이 불러일으킨 이해관계의 이분법을 ‘중립화할’ 사람이 바로 기업가다. 이해관계는 불가피하게 분산되고 실제로 중요한 측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데, 기업가는 상호 과업(a mutual task)을 그래서 포괄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과 자본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 이 자리에서는 자세하게 다룰 수 없지만 - ‘함께 결정함(co-determination)’이란 전체 현안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노동의 자본에 대한 ‘우위성’ 혹은 ‘우선성’이란 개념은 논쟁적인 해석을 유발하는데, 물론 그것은 그 구절의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다. 만일 그 구절에서 대립을 끌어내는 식으로 노동과 자본 사이의 구별을 고집한다면, 그리고 그 대립 내에 계급 투쟁을 위치시킨다면 곧바로 이상적인 관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자본이 노동을 조직한다.’라는 원리는 ‘노동이 요구되는 자본을 조직한다.’라는 요구와 맞서게 된다. 생산 수단이 그 소유자들로부터 임대 또는 대여된다는 점에서 가능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아이디어가 그 자체로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선언한다면 누구에게도 불의가 행해진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오해는 종종 단순한 언어학적 용어에서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노동하는 개인의 존엄으로 대변되는 ‘노동’은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우선성으로 인식되어, 근본적으로 자본을 노동에 종속시킨다. 이런 식으로 자본은 ‘오로지’ 하나의 도구가 된다. 그렇게 보이면, 단순하게 하나를 다른 하나와 부당하게 대립시키는 것을 회피하려 요구된 ‘동등(동격, and)’은 마침내 ‘이상’으로부터 일탈로 나타난다. 나는 이것이 자본에 대한 일종의 근본적 저평가라고 여기는데, 그 자본은 특히 오늘날 생산 조건에서 경제적 과정들을 맨 처음 시작하기 위해 불가결하다. 더구나 그 모든 경제적 과정들은 이미 매우 높은 정도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수익성 문제와 생산의 재정적 유용성 계산과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종종 ‘자본 위의(over) 노동’ 원리의 해석은 물질적 골격 조건들 그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영지주의나 이상주의라는 숨은 형태를 구체화한다. 인격주의(personalism)의 발견이 분명히 사회윤리 및 교회의 사회 교리를 위해 이용되고는 있지만, 그 인격주의를 인위적으로 과장하는 것과 인간의 주체성을 실질적으로 유일한 요소로 축소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것은 기업가의 역할

은 말할 것 없고, 자연과 일반적 물질 조건과 그럼으로써 자본의 근본적 중요성마저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인간론이 될 것이다. 만일 이런 위험들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과소평가된다면, ‘자본 위의 노동’ 원리는 양면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 노동의 인격적 개념이 경제적 문맹이 되어서는 안 되면, 때로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갖고 시도된 것처럼, 편파적이거나 심지어 이념적으로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의 인간적 의미나 노동만을 과대평가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런 성찰을 잠정적으로 끝내고 싶다. ‘자본 위의 노동’ 원리는 분명히 고정된 차원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원리는 그 기원과 그 기능의 전망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원리는 틀림없이 - 가톨릭 사회 교리의 다른 많은 선한 원리처럼 - 개방된 원리가 될 것이다. 그 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기준이라는 기능을 가정할 것이다. 실제로, 이 원리에 대한 더 깊은 숙고가 있을 때, 세계화 현안의 전망 내에서, 특히 제3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점에서, 그 기준의 적용은 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문헌처럼, 1986년 3월 22일 신앙교리성(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이 발표한 그리스도인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the Instruction on Christian freedom and liberation)은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밝힌 이 기본적 사상을 취하고 있다. 교황 자신은 다음과 같이 밝힘으로써 언제나 그 기본적인 사상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성은 고용주들에게 이윤의 증대에 앞서 노동자들의 복리를 고려하라는 정의의 의무를 지운다. 고용주들은 자본을 비생산적이지 않게 할 도덕적 의무와 투자할 때 공동선을 먼저 생각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이 도덕적 의무는 일자리를 공고하게 하려는 우선적 노력이나 실제로 유용한 재화의 생산에 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선적 노력을 요구한다.”

이것은 특히 인간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상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회칙 「민족들의 발전」을 발표하고 20년이 지나 1987년 12월30일 발표된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사회적 관심」은 「노동하는 인간」에서 밝힌 진술들을 다시 밝히고 있으며, 이 진술들을 매우 분명하게 발전에 결부시킨다. 교황은 자신이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발전의 주역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인간의 소명을 언급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노동은 그 인

격적 성격으로 인하여, 인간 발전에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입장은 교회의 전체 사회 교리와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회 교리의 맥락으로 흘러 들어간다.

노동의 우선성에 대한 성찰

H.E. PATRIARCH ANGELO SCOLA¹⁾

현안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몇 가지 물음이 있다. 나는 Malinvaud와 Archer의 글들이 나 같은 평신도조차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분명한 용어로 자본/노동의 관계에 있어 지난 몇 해 사이에 일어난 주요 변화들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이 글들은 이 모임을 열게 된 물음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 물음을 반복하면, 변화된 상황에서, 노동의 우선성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가? 그리고 회칙 「노동하는 인간」(11-15항 참조)이 제시한 용어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회칙 「백주년」(특히 32-35항, 43항)이 제시한 더 복합적인 경제 체계의 관점은 우선성을 충분히 재확인하는가?

비판적인 관심

이 문제의 집합을 부득이 도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우리는 순전히 경제 지형에 외적인 것으로서 제안된 윤리학적 및 인류학적 참조에 기반한 이 원리를 재확인하는 데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경제 영역이 자율적이고 절대적이며 자기 일에 열중하는 세계로 간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가, 그 구성적 요소들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의 복잡한 연결들에 있어서, 그 내부에서부터 윤리학과 인간학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요구한다는 보여주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은 경제 분야에서 강한 의미로 편리하게 나타나야 하며,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노동/자본 관계: 그 변화들

Malinvaud와 Archer는 노동/자본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대단히 잘 분석했으므로 그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다. 다만, 경제활동이 이제 ‘공장 체계’에

1) 안젤로 스콜라 추기경 (1941 -) 신학자, 철학자. 밀라노 대교구장.

기초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준의 인간관계에서 자본과 노동이라는 계급 사이의 (국가, 자본, 노동 사이의) 균형 잡힌 관계는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른바 세계 차원의 시장(global market)에서 관계자들은 이제 '사람들'을 직접 '다루지' 않으며 대신 자본의 배치에 관련한 정보와 결정을 '다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경제적 동력은 사회적 동력과 더욱더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3 영역의 비중이나 단체(기업)의 활동과 결과에 있어 소비 행위의 중요성이 갖는 비중을 생각해보자.

따라서 우리는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회 교리가 제시하는, 성찰의 원리,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지침을(「자유의 자각」, 72항 참조) 따르려 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성이라는 사회교리 원리가 있음에도 말이다.

이 원리를 재확인하기 위한 토대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조건들에서조차 우리의 설명에 기초가 되는 이 원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 나는 노동을 생산 과정의 한 요소를 강등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적합한 노동 개념을 이념적으로 축소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옛 방식의 공장 체계에서 발생하곤 했던 그런 일은 완전히 시대에 뒤진 것이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언제나 그 같은 접근을 배격했다.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체험을 떠받치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다. 다른 한 기둥은 정서적 생활(emotional life)이다. 그리스도교 인간학에 있어, 노동은 - 노력(수고)을 더 요구하고 모순적인 측면들이 있음에도 -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께서 펼치는 창조 및 구속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 형식이다.

둘째, 경제성장이 생산 요소들에만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는, 최근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성찰은 노동의 이 인간학적 가치를 입증하는데, 이런 확증이 바로 이 원리가 유효하다는 두 번째 근거가 된다. 실제로 주식자본은 필요하더라도 경제성장의 일부 만을 설명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생산 및 조직 도구들의 사용에 있어 인간 노동의 효율성에 훨씬 더 많이 좌우된다. 나의 견해로는,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성장에 있어 중추적 요소들로서 학습과 인간적 자본에 대해 말

함으로써 주장하는 바는 노동의 탁월성이 정확하게 경제 과정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명확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인간학적 긴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학 그 자체다.

셋째, 지난 몇 십 년 동안 제도적 전망이 중요해졌다. 즉 경제활동이 따라야 할 규칙과 규범 그리고 가치의 공유 체계는 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나쁜 법률은 경제를 질식시킨다. 창조적이지 못하고 재분배의 성격만 띠는 문화적 행위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다른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윤리적 욕구는 경제 내부에서 나타난다. 이 욕구는 입법 과정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그 제도 구축은 사회생활의 조직화에 의해 실현되는데, 이런 제도 구축이야말로 인간 '노동'이 자본보다 우선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비록 간략하게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이 명백히 강조하는 것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성이다. 비록 이 탁월성이 인간학과 윤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그 자체의 내부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경로는 따라야 할까?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성을 최대한 실효적으로 떠받치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 정책들을 지배하는 보편적 규칙들을 강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세계 차원의 거버넌스가 바람직할 것이다. 아주 간결하게 말해서, 이 세계 차원의 거버넌스는 경제 영역에서 인간의 권리들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 같은 목표가 단순히 민족 국가의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세계 차원의 질서, 곧 모든 정부가 따라야 할 질서의 구축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런 제안은 분명히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현 경제생활의 복잡성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생산 과정과 시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규칙들도 고려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은 경제적 골격 안에 새로운 제도적 편제가 창조될 것임을 예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우리가 그 전망을 꿰뚫어 보고 그 전망이 지닌 모든 측면을 검토할 용기를 가질 때에만 실행 가능할 것이다. 경제(학)는 윤리(학)뿐만 아니라 인간(학)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법률은 공공 생활을 실질적으로 촉진한다. 법률의 과업은, 경제생활에 필요한 질서(order)를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할 방향을 지시함으로써, 새로운 경로를 열고 그 밖의 다른 경로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날 지배적인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골격 내에서, 이런 법의 차원이 인간학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경제 행위자들은, 인간과 사회의 자유와 인간 존재들과 민족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종교적 특성에 대해 얼마나 유연하고 그것들을 존중하든지에 상관없이, 판에 박힌 행동 규칙을 세우는 일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시대의 모든 윤리적 이론들을 괴롭히는 불편함을 피할 수 없다. 즉 윤리적 평가 자체의 주요 기준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개인적 삶과 공적인 삶의 수준에서 헌신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대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감대(a cultural consensus)에 의지할 수 없게 된다. 윤리학만으로는 인간 존재의 이해관계와 희망을 산출할 수 없다. 오직 잘 계획된 인간학적 제안만이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쳐, 중개 기구를 통해 그 자유를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좋은 삶(the good life)의 선순환으로 그 자유를 안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교회의 사회 교리에 있어서 직접적인 주제이다. 이 주제는 윤리학 이전에도 경제학은 인간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경제생활은 인간과 사회 공동체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경제 관계의 조화를 확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개념 내에 경제 관계가 놓여 있어야 한다. 적합한 인간학이 없으면, 경제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월성 원리의 타당성을 상기할 때 교회의 사회 교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문화적 전환점이다.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경제활동과 관계의 질

나는 사회 교리가 이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분야에서 도덕적 선의 식별은 재화와 용역을 창안하고 분배하는 주요 목표를 제쳐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와 이익을 창출하고 가능한 한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경제활동은 수단(재화와 자원)과 목표(욕구) 사이의 추상적인 관계에 국한될 수 없다. 그것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다형성의 실재(a

polymorphous reality)이다. 그것은, 생산 수준과 분배 및 소비 수준 모두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만남과 그들 사이의 교류 관계를 내포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의 범위를 예견한다.. 윤리적-경제적 활동은 사물과 수행(things and performances)으로 중재되는 상호인격적 관계를 구조화하는 한 방식이다. 관련된 많은 요인 때문에, 오늘날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첫째: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욕구에 응답하는가?

둘째: 경제활동이 추진해야 할 관계의 본성은 무엇인가?

복잡한 경제적 골격 내에서 개인들, 중개(중간) 기관들 그리고 전체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와 비판적 기능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그리고 욕구의 인간적 질(human quality of the needs)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문제다.

경제, 교육과 정치

경제가 요구하는 적절한 윤리적-인간학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분석가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적 역학 및 경제성장 자체에 중추적인 노동의 형태를 충분히 향상하기 위해 현재 어떤 종류의 교육이 가능한가? 다른 말로 해서, 어떻게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월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사회 교리의 주요 두 기둥, 곧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회, 시민 사회 (따라서 '기업') 및 국가와 같이 사회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자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이 자본이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H.E. MONSIGNOR DIARUID MARTIN¹⁾

나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월성에 관한 나의 성찰로서 그 제목을 ‘사람이 자본이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로 삼았다. 주요 자원은 인간의 지성, 곧 사람들의 창의성과 혁신의 역량이다. 사람들에게 대한 투자는 강력한 지식 기반 경제를 위한 주요 전제 조건이며, 비숙련 노동자는 우리 경제의 어느 부문에서도 가장 소외(주변화)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본과 함께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말하고 있다.

이런 개념들은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백주년」에서 매우 단순하게 여러 방식으로 요약되어 있다. 한때 생산의 결정적 요소가 토지였고, 후에 자본이 생산수단의 총체적 복합체로 이해되었지만, 오늘날 결정적인 요인은 점점 더 사람 자신이 되었다. 즉 그의 지식, 특히 그의 과학 지식, 상호 관련되고 압축적인 조직의 운영 능력,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인식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의 능력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회칙 「백주년」의 또 다른 단락에서 교황은 소유권의 또 다른 형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중요함이 덜하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자본에 대해, 즉 노하우와 과학기술과 기술의 소유(the possession of know-how, technology and skill)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민족의 부는 자연 자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런 종류의 소유에 기반하고 있다. 지식 기반 국가들이 탈-산업화하고 있으며 점점 더 서비스 지향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교황이 산업화가 이루어진 민족(industrialized nations)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 회칙에서 그는, 오늘날 그가 회칙을 쓰고 있다면, 아마도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하나의 자본이지만 인류를 위한 자본인, 이 지적 자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나타날 그 도전 과제를 탐구했을 것이다.

1) 디아루이드 마틴 대주교 1999년 주교 수품, 2004년부터 더블린 대교구장을 맡고 있다. 2001-2003년 UN 산하 기구(Office of the United Nation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in Geneva)와 WTO에서 업저버로 활동을 하였다

인간의 인격이 현대 경제의 성공을 결정 짓는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덜 객관화될 것임을 의미하는가? 그런 식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다고 확신하지는 못하겠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명한 사업가와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대화 중에 제 말을 끊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몬시뇰, 누군가 당신에게 자원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비즈니스가 그 사람들을 사람들로 대할수록 비즈니스는 더욱 성공적일 것이라 이해해야 합니다. 단 그들이 진정으로 공헌할 것이라 그렇게 취급될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체 인간적 역량이 향상되어 현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헌을 가져올 때만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제기한 질문에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선 혁신은 단순히 객체화(객관화)되고 사전 포장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경제는 그 인간학을, 즉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고결함으로 존중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똑같은 원리가 두 가지 다른 적용 분야에 관련된다. 예를 들어, 교황은 회칙 「백주년」에서 한편으로 기업을 서술할 때 ‘노동의 공동체’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관념에 주목하며, 다른 한편으로 기업 내에서 이익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경제는 인간학이 필요하며, 교회의 사회 교리는 인간에 대한 특유한 관점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그 관점은 다른 사회적 관점과는 구별된다. 첫째, 인간은 하느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다. 이는 존재할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형태의 자본과 관련해서 그리고 침해할 수 없는 그의 존엄과 관련해서 인간들을 전적으로 다른 정세에 위치시킨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하느님은 삼위일체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정의에 있어 관계라는 개념이 나온다. 인간은 절대로 폐쇄된 개인이 아니라 언제나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 관계라는 이 개념 내에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관계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교회의 사회 교리에 있어 하나의 특별한 분야는 노동자와 가족의 역할에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교회의 사회 교리는 가족 임금(생계임금)에 관해 말하였다.

교회의 사회 교리가 공헌한 그런 것들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권 선언이 노동의 보수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러 곳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은 흥미롭다. 분명히 이는 그 선언을 작성할 때 참여했던 가톨릭 대표자들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는 이를 또렷하게 묘사한 Glendon 교수의 연구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그의 연구에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사회 교리와 인권의 전통은 모두 그 새로운 차원들을 다루는 데 있어 오늘날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리들은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지급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동등함에 관해 이야기할 때 유효한 원리이다. 그러나 동등함을 말할 때 여러분은 자주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차원을 잃어버린다. 다음과 같은 물음을 생각해 보라. 모든 노동자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가족의 책임 가운데 어떤 책임이 피고용인의 사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의 문제가 되어야 하거나, 혹은 사회 보험 밖의 다른 어떤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분명히 사람과 그의 관계 사이에서 일종의 긴장을 보게 될 것이다. 이상하겠지만, 임신하고 양육하는 여성의 특수성이 인정될 때까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변화하는 역할들과 함께 그 특수성이 방정식에 대입될 때까지,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는 그 방정식에 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말해서, 가족 임금에 관해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 우리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오늘날 세계 많은 지역에서 생계 임금(a subsistence wage)을 찾아볼 수 없다.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노동빈곤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완전히 고용되어 있으나 극빈층에서 벗어나는 데 충분한 수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며, 이 현상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 유형의 불확실성에 의해 심화가 된다. 그것은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 사이의 관계에 단층 변화가 생길 때 다시 더 어려워진다. 많은 소기업조차 그 기업이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이제 누가 그 기업의 노동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다른 대륙에 살고 있을 수 있으며 하위 계약들의 복잡한 상호 연결을 통해서만 최종 고용주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국제 노동 기준의 수립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옹호의 보장 방법을 찾을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은 현재 존재하

지만, 그 안에 새로운 긴장이 존재한다. 가난한 나라의 비교 우위는 값싼 노동 비용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노동 기준을 유지하고 (노동의) 주도권을 장려하기 위한 올바른 장치를 찾아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협상을 지켜보면서, 나는 사회 경제적 권리들이라는 강력한 개념이 효율성과 상충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점점 더 거부하는 선진국의 문제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물음들이 생깁니다. 효율성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효율성은 예를 들어 물리적 재화를 제공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은 생산된 콩이나 맥주 깡통의 수를 셀 수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서비스 부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문에서의 성공은 때때로 생산된 인간관계의 질로 측정될 수 있다. 이 부문에서 성공을 측정한다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그 어려움은 이제 노동과 자본 사이,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긴장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인간적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과 관련된 물음이다. 여러분은 그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예를 들어 경찰력처럼 사회적 재화의 전달에 관해 그 효율성을 측정할 때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만일 효율성이 범죄를 저지른 범 죄인을 찾는 것을 뜻한다면 이는 효율성의 수학적 정의를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여러분이 제시된 기간에 범인의 80%를 체포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면, 여러분의 경찰력은 오직 40%만 체포한 경찰력보다 더 효율적이라 측정할 수 있다. 혹은 만일 여러분의 사회적 용역 제공자가 하루에 60명 노인의 발톱을 손질한다면, 그는 같은 시간 같은 비용으로 35명 노인의 발톱을 손질하는 사람보다 더 효율적이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의 유일한 기준인가? 예를 들어 같은 조건에서 더 효율적인 경찰력이 죄가 없는 사람들도 더 많이 체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혹은 발 관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인이 발 관리만이 아니라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까지 원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간과할 수도 있다. 이는 의사나 보건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효율성 측정할 때에 더욱 그렇다.

만일 성공이 인간관계의 질로 측정된다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순전히 경제적인 측정 기준이 적용된다면, 노동자를 정량화하고 객체화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인간적 능력과 관련한 서비스를 덜 효율적이며 덜 창의적인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효율성이 처음부터 작업 전체의 초점이었기 때문

이다. 때때로 위기의 때에 일부 이런 경제적 측정 기준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효율성과 측정, 인간의 정량화와 객체화 역시 중요하다. 정량화는 개인적 공헌과 재능을 효율적인 결과와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생산되어야 할 생산물에 더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나는 영국 존 메이저의 시민헌장에 대해, 그리고 내가 여권 심사를 받을 때 10분 동안 기다렸을 때 이 시민헌장을 자주 생각한다. 인적 혁신과 재능이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 가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승리할 효율적이고 유연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그런 서비스 공급자들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술적으로 효율적이고 인간적으로 유익하며 가격 우위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나는 멀리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갈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다.

사람이 자본이 되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는 적극적인 사람이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미 경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는 미국의 평균적인 어린이가 동-남아시아의 유사한 어린이보다 2년 동안 학교에 덜 다닌다는 것, [경제가] 교육의 질에 더욱더 좌우된다는 것, 그리고 이는 가르침과 교사의 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많은 곳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낮고 교육 관리가 너무 중앙집중적이며, 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분은 많은 개발도상국에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명 학교의 문제, 또는 봉급 받을 것만 주장하는 유명 교사의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교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요구되는 교육체계는 창의성을 격려하고 산출하는 체계다. 자주 언급했듯이 학교 체계는 (영국의) 국교 신봉(conformity)을 격려했다. 다행히 나는 어떻게 비국교도가 되고 그런 조건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법을 알았다. 그러나 빈곤이 인간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면, 빈곤에 맞서는 투쟁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고 그것을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구체화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서 교육과 양성을 통한 개인의 향상(the advancement of the individual)뿐만 아니라 참여와 공유 책임 조직의 창조를 통한 사회의 주체성(the subjectivity of society)이 요구된다. 여기서 다시 또 다른 긴장이 발생한다. 누가 이 교육에 드는 비용을 치르는가? 경제 행위자는 좋은 교육을 받은 능동적인 주민에게서

혜택을 받지만 언제나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지는 않는다.

다른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 나로서는 오늘날 ‘인간의 중심성’과 ‘인간의 객관화’ 사이의 갈등(충돌)이 가장 지독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이주의 분야다. 사회가 시작한 이래 사람들은 이동했다. 이 유동성은 불가피하게 세계화 시대의 특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과 통상과 함께 나타난 모든 것과 더불어, 때때로 이주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아무리 관리되는 이주에 관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거의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주는 참으로 win/win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주는 보내는 나라의 고용 압력을 완화하고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욕구에 부응한다. 이주는 또 다른 문화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송금은 여러 나라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람들이 귀국했을 때 낮은 수준에서 기술적 이전의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더욱더 인간학의 개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간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인류 가족에 귀속되어 있다. 분명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두뇌 유출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보건의 개발도상국에 실제로 핵심적일 때, 보건 노동자들과 교사들의 극적인 손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 경제가 이 문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이루어진 한 사례가 있는데, 축구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계발된 재능을 얻기 위해서는 더 부유한 나라들이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인간학 분야에서 그리고 인간이 자본이 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간학의 유형에 관한 마지막 논평은 창조의 보전 안에 있는 인간의 자리를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창조 이야기는 창조의 모든 요소는 그 특유한 고유의 자리를 가지며 그 요소는 선하다는 것을, 인류는 창조 안에 배치된 조화를 유지하는 과업을 맡게 되었음을 깨닫게 한다. 노동의 우위성(the primacy of labour)은 노동의 환경(the environment of work)에 관한 특정 질적 차원들도 포함해야 한다. 이 조화에 관해 말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리고 창조의 보전이 인류에게 맡겨졌을 때, 그 일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인류에게 맡겨진 것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나머지 창조에서 조화를 찾고 유지하는 일에 있어도 핵심이라는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다시 노동에 관한 우리의 성찰에 있어 간과된 한 차원이다.

다시 나는 교황이 “경제적 자유는 인간 자유의 한 요소일 뿐이다.”라고 말한

회칙 「백주년」으로 돌아가서 요약하려 한다. 경제적 자유가 독립적인 것으로 될 때 사람은 생활하기 위해 생산하고 소비하는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재화의 생산자나 소비자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인간과의 그 불가결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인간을 소외하고 억압하게 될 수밖에 없다. 현대의 경제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차원 그 이상의 다른 많은 인간적 차원들의 통합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다.